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75호 2023년 6월 23일(금)

## 고 시

-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..... 2

## 공 고
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종로3-35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열람공고 ... 3

## 입법예고

-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
입법예고 ..... 7

##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

대포항희망1길 일방통행구간내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16일

### 속 초 시 장

1. 지정목적: 보행로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대포항희망1길 일방통행길 구간내 교통안전사고 예방
2. 관련근거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
3.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간
  - 가. 지정위치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항희망1길 일방통행구간 (대포동 964-12 ~ 대포동 956)
  - 나. 소재지: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965 일원
  - 다. 지정연장: 546m
4.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현황 위치도

지정위치도(대포항희망1길 일방통행구간)





(당초)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사업규모	면적	비고
도로	중로3-35호선	B=25~29.5m, L=124m	4,546㎡	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

(변경)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사업규모	면적	비고
도로	대로3-4호선	B=25~29.5m, L=124m	3,720㎡	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

8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■ 토지조서

(당 초)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소유자		관계인		권리내용	비고
				지적	편입		주소	성명	주소	성명		
					도시계획내	도시계획외						
계				43,965	2,978	1,568	4,546					
1	조양동	1191-5	도	5,789	-	63	63	속 초 시	공			
2	조양동	1176-3	도	3,749	7	39	46	속 초 시	공			
3	조양동	1177-1	답	1,479	2	-	2	속 초 시	공			
4	조양동	1178	전	200	94	8	102	조양동 109*	진*원			
5	조양동	1196-3	임	3,162	588	140	728	조양동 1117-*	여**씨			
6	조양동	1179	전	185	9	5	14	온정로1길 11-*	김*남			
7	조양동	1177-2	전	2,833	12	7	19	교동 773-*	김*영			
8	조양동	1181-7	답	46	46	-	46	온정로1길 26-**	김*중			
9	조양동	1181-6	대	614	-	19	19	청대로 85-**	김*중	강원도속초시 중앙로21(교동)	속초농업협동조합	근저당권
10	조양동	1181-1	답	3,079	-	2	2	온정로1길 26-**	김*중			
11	조양동	1180	전	116	100	8	108	금호동 622-**	최*수			
12	조양동	1087-4	구	2,282	713	131	844	속 초 시	공			
13	조양동	1196-5	임	765	192	204	396	조양동 120*	김*혁			

14	조양동	1182	전	714	543	80	623	온정로1길 9-*	김*혁	강원도속초시 중앙로21(교동)	속초농업 협동조합	근저 당권	
15	조양동	1183	전	215	-	27	27	조양동 120*	김*혁				
16	조양동	산90-1	입	2,777	146	92	238	교동 774-**	신**씨				
17	조양동	1181-2	답	3,263	65	113	178	교동 98*	김*일				
18	조양동	1244	답	3,782	419	553	972	양양군 서면 오색리 46*	양*규				
19	조양동	산90-2	입	8,826	42	7	49	조양동 1118-*	진*우				
20	조양동	1245	답	89	-	70	70	조양동 92*	김*주				

(변 경)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소유자		관계인		권리 내용	비 고
				지적	편입		주 소	성명	주소	성명		
					도시계획 내	도시계획 외						
계				28,005	2,748	972	3,720					
1	조양동	1191-5	도	5,789	67	-	67	속 초 시	공			
2	조양동	1176-3	도	3,749	56	2	58	속 초 시	공			
3	조양동	1177-1	답	1,479	2	-	2	속 초 시	공			
4	조양동	1178	전	200	95	7	102	조양동 109*	진*원			
5	조양동	1196-3	입	3,162	590	131	721	조양동 1117-*	여**씨			
6	조양동	1179	전	185	9	2	11	온정로1길 11-*	김*남			
7	조양동	1177-2	전	2,833	12	5	17	교동 773-*	김*영			
8	조양동	1181-7	답	46	46	-	46	온정로1길 26-**	김*중			
9	조양동	1181-6	대	614	-	13	13	청대로 85-**	김*중	강원도 속초시 중앙로21(교동)	속초농업 협동조합	근저 당권
10	조양동	1181-1	답	3,079	-	2	2	온정로1길 26-**	김*중			
11	조양동	1180	전	116	101	7	108	금호동 622-**	최*수			
12	조양동	1087-4	구	2,282	426	123	549	속 초 시	공			
13	조양동	1196-5	입	765	214	141	355	조양동 120*	김*혁			
14	조양동	1182	전	714	553	81	634	온정로1길 9-*	김*혁	강원도 속초시 중앙로21(교동)	속초농업 협동조합	근저당 권

15	조양동	1183	전	215	-	42	42	조양동 120*	김*혁				
16	조양동	산90-1	임	2,777	577	416	993	교동 774-**	신**씨				

■ 물건조서

(당 초)

구분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단위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
1	조양동	1178	비닐하우스		1	동	진*원	조양동 109*				
2	조양동	1196-5	묘 지		1	기	김*혁	조양동 120*				

(변 경)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	단위	소유자		이해관계인			비고
	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
1	조양동	1178	비닐하우스		1	동	진*원	조양동 109*				
2	조양동	1196-5	묘 지		2	기	김*혁	조양동 120*				
3	조양동	산90-1	묘 지		1	기	신**씨	교동 774-**				

#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6월 23일

## 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2. 개정이유
  - 상위법령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 - 가. 자치법규 명칭 변경 및 목적, 설치, 기능(안 제1조~제3조)
  - 나. 구성, 임기, 해촉, 위원회 회의 등(안 제4조~제7조)
  - 다.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)
  - 라.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회의록, 수당, 비밀준수의 의무 등(안 9조~제12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교육가족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
- 연락처 : 전화 033-639-2492 / 팩스 033-639-2059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교육청소년팀(☎033-639-249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3조(기능)**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
2.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·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4.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5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6.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때에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 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,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, 속초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임기)**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·제척·기피 등)**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·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「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7조(회의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,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

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,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.

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통합사례회의 운영)**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,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, 지역유관기관 연계,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**제10조(회의록)**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심의위원회, 실무위원회,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.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자치법규명 :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(의견제출 및 처리)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